2015년 이사회의사록

1. 일　시 :　2015. 12. 21(월) 11:00

2. 장　소 :　대표이사실

3. 참석임원: 이사 총 7명중 5명 참석
대표이사 장영순, 이사 이상주, 이사 이충호, 이사 이상문
이사 권도국
참석직원: 공보연예림일터원장, 도경옥예림공동생활가정원장,
손소희예림원장, 김덕준핸인핸국장, 김인수법인국장

4. 심의안건: 1) 2015년도 추경예산(안)
2) 201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3) 기타토의(안)

5. 회의내용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ㅇ 장영순의장 : 법인국장이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니 개회를 선언하다.

2) 전차회의록 접수승인

ㅇ 장영순의장 : 법인국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케 하고 이의여부를 물은 결과, 이사진 전원이 이의 없다고 답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승인하기로 선포하다.

3) 안건상정 및 결의사항

(1) 제1안건 2015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ㅇ 장영순의장 : 각 기관의 2015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상정동의를 확인하니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고, 제안설명을 요구하

다.

ㅇ 김인수법인국장 : 예림원, 예림공동생활가정, 예림일터, 핸인핸 2015년 추경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단위:천원)

기관명	당초예산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비율	비고
예림원	2,322,853	2,288,037	-34,816	-1.5%	
예림공동생활가정	346,815	333,572	-13,243	-4%	
예림일터	1,073,256	985,158	-88,098	-8%	
핸인핸	7,244,252	7,251,402	7,150	0	

ㅇ 장영순의장 :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다.

ㅇ 이상주이사 : 2015년도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니, 합당한 세출예산의 편성이라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ㅇ 이충호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ㅇ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1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2) 제2안건 201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ㅇ 장영순의장 : 법인과 각 기관의 201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일괄상정동의를 확인하니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일괄 상정토록 하고,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ㅇ 김인수법인국장 : 손과손, 예림원, 예림공동생활가정, 예림일터, 핸인핸 201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하다. 핸인핸은 2016년 예산계획 시 보조금 예산은 동구의 예산 미수립으로 인하여 6개월분으로 한하여 수립하라는 지침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수익회계 세입예산액 6,584,336천원에서 종사자 추가 인건비 102,251천원, 일반관리운영비로 553,393천원을 책정하였음과 예림일터는 수입회계 세입예산액 600,000천원에서 종사자 인건비 31,783천원, 일반관리운영비로 66,767천원을 책정하였음을 설명하다.

ㅇ 장영순의장 : 각 기관의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기준으로 책정하였고, 2016년 인천시 내시자료가 확정되면 1차 추경으로 조정할 것이며 각 기관별

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음을 보충설명하다.

ㅇ 권도국이사 : 201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검토하니, 법인 및 기관의 사업운영에 합당한 예산의 편성이라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다.

ㅇ 이상문이사 : 동의에 재청하다.

ㅇ 장영순의장 : 동의와 재청에 따라 찬성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2안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하다.

4) 기타토의

ㅇ 장영순의장 : 기타토의사항에 대한 유무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이 없다고 답하다.

6. 폐회

ㅇ 장영순의장 : 폐회동의를 확인한 결과, 전원이 찬성하여 폐회를 선언하고 12;00에 폐회하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 참석이사 전원 기명날인하다.

2015. 12. 21.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장영순

이 사 이상주

이 사 이충호

이 사 이상문

이 사 권도국